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평화와 공존을 위한 조선의 선택-

김보한**

bhkim701@hanmail.net

Contents

- I. 머리말
- II. 고려 말 대왜인 정책과 '무로마치 왜구'
 - 2.1. 고려 말 왜인의 수용과 그 난맥상
 - 2.2. 고려 말 '무로마치 왜구'의 활동과 외교적·군사적 대응
- III. 조선 초의 대왜인(對倭) 정책과 그 변용
 - 3.1. 조선 초 대왜인 정책과 조선의 선택
 - 3.2. 조선 초 대왜인 정책의 부작용과 조선의 변용
- IV. 맺음말

Abstract

Wakou appeared in the early of 13th century. After 1350, Wakou often invaded Goryeo kingdom and caused considerable damage in its society and economy. Goryeo kingdom dispatched an envoy to Japan for the checking of Wakou from 1360's.

In 1370's, Goryeo kingdom carried out the military sanction in order to check the Wakou aggression. For example, Goryeo kingdom won a signal victory in Jinpo, Hwangsan and Gwaneumpo through gunpowder weaponry and gone on a conquest of Tsushima. In other words, Goryeo kingdom tried to check Wakou through the power of diplomacy and military. But these policies of Goryeo kingdom hesitated to say positively their success. Because Wakou was not eradicated.

Meanwhile, Joseon kingdom adopted a policy that was very amicable toward the Japanese to maintain the peace and the stability. As a result, the number of Japanese that lived in Joseon kingdom increased rapidly as compared with Goryeo kingdom. Joseon kingdom satisfied the demand of Japanese that lived in Joseon kingdom and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일본중세사(중세 한일관계사).

implemented the friendly police. For example, Joseon kingdom has been settled the Japanese in three ports and carried out the economic aid.

Then, these polices needed many economic aid.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total cost of these polices are very similar to the grain supplies that Wakou has plundered from Goryeo kingdom. Ultimately, the economic aid of Joseon kingdom to Japanese is of a degree that Goryeo kingdom is plundered by Wakou.

Therefore, the peace of Joseon kingdom is able to be kept by shouldering the economic burden. This is the choice of Joseon kingdom and the peacekeeping cost to the peace of Joseon kingdom and East Asia.

Key Words : 고려, 조선, 무로마치, 왜구, 약탈, 3포, 진포, 황산, 관음포, 해동제국기, 경국대전, 평화유지비용
(Goryeo, Joseon, Muromatsi, Wakou, Plunder, Three Ports, Jinpo, Gwaneumpo, Peacekeeping Cost)

I. 머리말

14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과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 원·명의 교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등 실로 다변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왜구의 활동이다. 특히 왜구의 활동은 고려 말 정치적·사회적 폐해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멸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왜구의 출현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조선 전기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은 왜인의 수용, 외교 사신의 파견, 군사적인 대응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왜구의 활동과 관련해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대외정책을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¹⁾ 그

1) 고려 말의 왜구에 관한 연구로는 孫弘烈(1975)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9, pp.47-59 ; 羅鐘宇(1980) 『高麗末期의 麗·日 關係 -倭寇를 중심으로-』, 『全北史學』4, pp.78-90 ; (1994)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pp.407-15; 李鉉淙(1994) 『講座 韓日關係史』, 현음사, pp.236-46 ; 金琪燮(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韓國民族文化』9, pp.23-36 등이 있다.

조선 전기 왜인에 대한 연구로는 李鉉淙(1959)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史學研究』3, pp.26-37 ; 장순순(2001) 『조선전기 왜관의 성립과 조·일 외교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15, pp.70-76 ; 손승철(2012)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

런데 회유책과 강경책의 이분법적 접근은 대왜인(對倭人) 정책과 외교 정책(= 대왜 정책)을 함께 혼용하여 왜인과 일본(=막부)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였다. 더 나아가 고려와 조선에서 상통했다는 통념 하에서 두 시대를 하나의 시야로 묶어 보는 논리 전개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우선 대왜인 정책과 관련해서 조선 초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왜인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조선의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 초의 대왜인 정책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조선의 정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고려 말 무로마치 왜구의 출현을 막기 위한 대왜인 정책과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다음에 제Ⅲ장에서 조선 초 대왜인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의 대왜인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Ⅱ. 고려 말 대왜인 정책과 ‘무로마치 왜구’

2.1. 고려 말 왜인의 수용과 그 난맥상

고려는 10-11세기부터 왜인을 수용하고 이들을 고려 내에 정착시키고 있었다.²⁾ 또한 일본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서 금주에 자주 출입하면서, 13세기 후반까지 왜인의 금주 거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³⁾ 그러나 1274년과

의 시대에서 공존,공생의 시대로-, 『사림』41, pp.9-12, pp.17-25 ; 한문종(2004)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日本思想』7, pp.56-58 ; (2008)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22, pp.7-10 등이 있다.

2) 『고려사』 권3 세기3 목종 2년(999) 7월조. “日本国人道要弥刀等 二十戸来投 処之利川郡為編戶.” ; 『고려사』 권4 세기4 현종 2년(1012) 8월조. “日本国潘多等三十五人来投.” ; 『고려사』 권5 세기5 정종 5년(1039) 5월조. “日本民男女二十六人来投.”

3) 1267년(원종 8) 1월 송군비와 김찬이 몽골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거제도 송변포(松邊浦)에 왔다가 풍파가 험하여 되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 속에 일본이 본래 고려와 통호하지 않지만 대마도 사람들이 때때로 무역하러 금주(金州)에 오고 간다고 전하고 있다(『고려사』 권26 세기26 원종 8년(1267) 8년 정월조 ‘詔旨所論道達使臣通好日本事謹遣陪臣宋君

1281년 몽골의 두 차례 일본 침입으로 왜인의 고려 거주에 대한 기록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14세기 중반 이후 왜인의 고려 거주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369년(공민왕 18) 7월 거제 남해현에 살고 있던 왜인들이 배반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그것이다.⁴⁾ 또 같은 해 11월 왜인이 거제에 살면서 화친하기를 원하였기에 고려가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영주(寧州)·온수(溫水)·예산(禮山)·면주(沔州)에서 조선(漕船)을 약탈하는 사건을 일으켰다.⁵⁾ 이처럼 왜인의 고려 거주가 반드시 화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거주인 경우도 존재하였다.

한편 <표 1>에서처럼 고려 말 무로마치 왜구에 의한 대규모 약탈은 13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수차례 발생하였다.

<표 1> 고려 말 ‘무로마치 왜구’의 침입 빈도와 대규모 약탈의 예⁶⁾

	西紀	A	B	C	대규모 약탈 / 대마도에 쌀 하사
충정왕 2	1350	7	6	6	
3	1351	4	3	4	
공민왕 1	1352	8	12	7	
2	1353				
3	1354	1	1	1	4월, 전라도 조선(漕船) 40여척 약탈
4	1355	2	2	2	4월, 전라도 조선 200여척 약탈
5	1356				
6	1357	4	3	4	
7	1358	10	10	6	

斐等伴使臣以往至巨濟渠遙望對馬島見大洋万里風濤蹴天意謂危險若此安可奉土國使臣冒險輕進雖至對馬島彼俗頑獷無禮義設有不軌將如何是以與俱而還且日本素與小邦未嘗通好但對馬島人時因貿易往來金州.)

4)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공민왕 18년(1369) 7월조, ‘辛丑 巨濟南海渠投化倭叛歸其國.’
 5) 『동국통감』 공민왕 18년(1369) 11월조.
 6) A는 羅鍾宇의 통계(羅鍾宇(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학교 출판국, p.126).
 B는 田村洋幸의 통계(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pp.36-37 ; pp.60-64 ; pp.70-72 ; pp.84-87).
 C는 田中健夫의 통계(田中健夫(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pp.4-10) ; ()는 (1957) 『中世海外交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p.4의 통계임.

8	1359	4	5	4	
9	1360	8	5	5	윤5월, 강화도에서 쌀 4만여 석 약탈
10	1361	10	4	3	
11	1362	1	2	1	
12	1363	2	2	1	
13	1364	11	12	8(10)	
14	1365	5	3	5 (3)	
15	1366	3	3	0	
16	1367	1	1	0	
17	1368				11월, 대마도 崇宗慶에게 쌀 1천석 하사
18	1369	2	2	1	
19	1370	2	2	1	

그런데 1354년(공민왕 3) 4월에 조운선 40여척을 약탈한 이후에 약 1년간, 1355년(공민왕 4) 4월 200척을 약탈한 이후에 1년 이상, 1360년 윤 5월에 4만 석을 약탈한 이후에 약 9개월간 무로마치 왜구가 고려 연안에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또 1368년(공민왕 11) 11월 고려 조정에서 쓰시마의 승종경(崇宗慶,)에게 쌀 1천석 하사한 이후에도 약 1년간 고려를 침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⁷⁾ 이상 4건의 기록의 공통점은 대량의 약탈물, 혹은 하사품이 전달된 이후에 9개월에서 1년 이상 조운선 약탈이나 민가 약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약탈물이 왜구 손에 들어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새로운 약탈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⁸⁾ 따라서 무로마치 왜구의 침입 목적은 자신들이 생활과 해적 활동에 필요한 곡물의 약탈에 있었다.

그리고 1370년대에는 『고려사』의 『김선치전』에서도 왜인의 거주와 배반과 관련된 내용이 전하고 있다. 1375년(우왕 원년) 7월 왜인 등경광(藤經光)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상륙해 약탈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양식을 요구하였다. 이때 고려는 이들을 순천(順天), 연기(燕岐) 등지에 분산 배치하고 양곡을 공급하면서 유인해서 제거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⁹⁾

7) 따라서 규슈와 세토내해의 해적에게 보충이 필요한 곡물(쌀)의 양을 1년에 최소 1천석에서 최대 4만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8) 김보한(2009) 『해적과 약탈경제』 『동북아문화연구』20, p.545.

9) 『고려사』 권114 열전 제27 김선치전, ‘辛禡初倭藤經光率其徒來言將入寇恐愒之因索糧 朝議分處順天燕岐等處官給資糧尋遣密直副使金世祐諭先致誘殺 先致大具酒食欲因餉殺之’.

이처럼 고려의 왜인 수용정책에 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려의 왜인 수용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단지 몇 개의 사료를 통해서 고려가 왜인을 분산 배치시키고 임시로 거주를 허가하는 정도로만 대응했다고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1350년 이후 무로마치 왜구의 갑작스런 등장과 약탈의 확대가 고려에게 경직된 대왜인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350-70년대 왜인은 고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고 고려 조정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로마치 왜구가 고려의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존재였기 때문에, 왜구로 활동할지도 모르는 왜인에 대한 경계(警戒)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경계 인식이 고려의 왜인 정책과 왜구 금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면 고려가 왜구 금지를 위한 어떠한 외교정책이 추진했는지, 고려의 사신 파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고려 말 ‘무로마치 왜구’의 활동과 외교적·군사적 대응

고려는 왜구가 출몰하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왜구 연구의 기본사료인 『고려사』에서는 13세기 초 ‘가마쿠라 왜구’의 침입을 처음 기록하고 있다.¹⁰⁾ 아울러 『고려사』에는 ‘무로마치 왜구’의 본격적인 출몰이 경인년(1350)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 특히 ‘무로마치 왜구’¹²⁾의 침입은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¹³⁾

그러면 먼저 1360년대와 70년대에 고려가 무로마치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고려사』 권22 세가 제22, 고종 10년(1223) 5월조 ; 고종 12년(1225) 4월조 ; 고종 13년(1226) 정월조 ; 고종 14년(1227) 4·5월조.

11) 『고려사』 권37 세가 제37, 충정왕 2년(1350) 2월조.

12) 필자는 왜구의 시기 구분에서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었고 왜구의 근거지가 일본열도 안에 있으므로, 일본사의 시기 구분을 적용하여 ‘가마쿠라 왜구’ 혹은 ‘무로마치 왜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3) 김보한(1999) 『一揆와 倭寇』 『일본역사연구』10, pp.73-4참조.

고려는 왜구 근절과 피로인 송환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하였다. 1360년대에 접어들면서 왜구의 발호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교토에 왜구 금지 사신을 본격적으로 파견하였다. 1366년(공민왕 15) 2월 김용(金龍)이 교토에 도착하여 6월에 돌아갔고,¹⁴⁾ 같은 해 11월에도 김일(金逸)을 파견하여 왜구의 금지를 요구하였다.¹⁵⁾ 막부는 교토에 도착한 이들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그 회답으로 다음 해 1월에 돌아오는 김일과 함께 일본 승려 범탕(梵滂)과 범유(梵繆)를 고려에 보내왔다. 이것이 고려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왜구 금지와 관련한 최초의 외교사절 교환이었다.¹⁶⁾

〈표3〉 1360-70년대 고려의 왜구 금지 사신의 일본 파견¹⁷⁾

	파견 시기	사신명	출전	사신파견지역
1차	1366년(공민왕 15) (?)월	金龍	『고려사』 『善隣國寶記』	교토
2차	1366년(공민왕 15) 11월	金逸	『고려사』	교토
3차	1368년(공민왕 17) 윤7월	李夏生	『고려사』	대마도
4차	1375년(우왕 원년) 2월	羅興儒	『고려사』	교토
5차	재 파견년도 미상 1376년(우왕 2) 10월 재귀국	羅興儒	『고려사』	교토
6차	1377년(우왕 3) 6월	安吉祥	『고려사』 『東寺文書』	교토
7차	1377년(우왕 3) 9월	鄭夢周	『고려사』	교토, 다자이후
8차	1378년(우왕 4) 10월	李子庸 韓國柱	『고려사』	다자이후
9차	1379년(우왕 5) 윤5월	尹思忠	『고려사』	다자이후

그리고 고려는 왜구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부와 대마도에

14) 『善隣國寶記』 貞治 6년(1367) 丁未条, ‘古記曰 二月十四日 高麗使万戸左右衛保勝中郎將金龍·檢校左右衛保 … (中略) … 通書 其略曰 海賊多數 出自貴國地 來侵本省合浦等 燒官廩 擾百姓 甚至於殺害 于今十有餘歲 海舶不通 辺民不得寧処云 … (中略) … 六月廿六日 將軍家以高麗回書 授使者’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15)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공민왕 15년(1366) 11월조 ‘壬辰 遣檢校中郎將金逸如日本 請禁海賊’; 『善隣國寶記』 貞治 6년(1367) 丁未条 ‘同廿七日 重申請 大夫前典義 令相金一來朝’.

16) 김보한(2001) 『少武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일본역사연구』13, pp.60-61 참조.

17) 김보한(2001) 『少武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p.62의 <표2>를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사신을 파견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7월 대마도에서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보내오자, 고려는 이하생(李夏生)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¹⁸⁾ 그리고 고려는 사신 왕래를 통해서 왜구 금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해 11월에 대마도에서 송종경(崇宗慶)이 사자를 보내 입조해 오자 그 답례로 쌀 천석을 대마도에 하사했기 때문이다.¹⁹⁾ 이처럼 고려와 대마도도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서 당면한 왜구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였다.

그런데 규슈의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규슈단다이(九州探題)로 부임하여 규슈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1372년에 왜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려사』에서는 1374년(공민왕 23)부터 왜구가 창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듯이,²⁰⁾ 1370년대는 60년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왜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는 1375년부터 5년간 거의 매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야만 했다. 이를테면 1375년(우왕 원년) 2월 나흥유(羅興儒)가 교토에 파견되었고,²¹⁾ 다시 파견된 나흥유가 1376년(우왕 2) 10월에 답례사인 승려 양유(良柔)와 함께 막부 외교를 담당하던 덴류지(天龍寺)의 승려 주좌(周左)의 서신을 가지고 귀국하였다.²²⁾ 이 서신에서 무로마치 막부가 고려의 왜구 금지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1370년대 고려의 왜구 금지 외교는 성과가 미미하였고, 오히려 왜구 출몰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따라서 1377년(우왕 3) 6월 안길상(安吉祥)이 교토에 와서 왜구 금지 약속의 불이행을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곳에서 병사하였다.²³⁾ 이에 대한 회답으로 1377년(우왕 3) 8월 다자이후에서 승려 신흥(信弘)을 보내

18)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공민왕 17년(1368) 7월조.

19)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공민왕 17년(1368) 11월조 ‘十一月 丙午 討馬島 萬戶崇宗慶 遣使來朝 賜宗慶米一千石’.

20)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遣判典客寺事安吉祥 于日本 請禁賊 書曰 …(中略)…稍得寧息 近自甲寅以來 其盜 又肆猖獗 …(下略)’.

21)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元年(1375) 2월조 ‘判典客寺事羅興儒 聘日本’; 『東寺文書』 永和 원년(1375) 11월 19; 永和 원년(1375) 12월 9일.

22)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2년(1376) 10월조, ‘惟我西海一路 九州亂臣割拠 不納貢賦 且二十余年矣 西邊海道頑民 觀釁出寇 非我所為 …(中略)…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禁約海寇’.

23)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왔다.²⁴⁾ 다시 고려는 그 답례로 같은 해 9월에 정몽주(鄭夢周)를 일본에 파견하기에 이른다.²⁵⁾ 이후에도 다자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1378년(우왕 4) 10월에 파견된 이자용(李子庸)와 한국주(韓國柱), 다음해 윤 5월에 파견된 윤사충(尹思忠) 등이 그들이었다.²⁶⁾

이처럼 고려는 교토의 막부와 왜구의 근원지인 규슈를 상대로 적극적인 왜구 금지 외교를 펼쳐 나갔다. 아울러 무로마치 막부는 왜구의 출현이 일본의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공감하고 왜구 금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70년대에는 고려의 왜구 금지 외교의 가시적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외교적인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우선 1372년(공민왕 21) 고려는 왜구의 주요 약탈품인 세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운을 통해서 운반하던 전라도의 세곡을 육로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²⁷⁾ 그리고 공민왕 시기에 바다에서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명에게 함선 건조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⁸⁾ 아울러 왜구 방비에 실패한 관원에 대해서 문책하거나 형벌을 가하는 등 왜구의 침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했다.²⁹⁾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고려는 점차 왜구를 격퇴시키는 가시적인 전과를 거두어 나갔다.³⁰⁾

24)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8월조 ‘日本国遣僧信弘 来報聘 書云 草窃之賊 是逋逃輩 不遵我命 未易禁焉’.

25)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9월조 ‘遣前大司成鄭夢周 報聘于日本 且請禁賊 …(下略)’.

26)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4년(1378) 10월조 ; 열전 47, 신우 5년(1379) 윤5월조 ; 신우 6년(1380) 11월조.

27) 『고려사』 권43 세가 제43 공민왕 21년(1372) 2월조.

28) 고려는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에 나아가 추적 체포하기 위해서 배에서 필요한 기계, 화약, 유황, 염초 등의 물품을 요청하고 있다(『고려사』 세가 제44 공민왕 22년(1373) 11월조).

29) 왜구 방어 실패의 문책으로 공민왕 22년(1373) 9월에 서해도 만호 許子麟을 교체하고, 같은 해 10월 李成林에게는 형장을 치고 봉줄로 편입시킨다(『고려사』 권44 세가 제44 공민왕 22년(1373) 9·10월조). 또 공민왕 23년(1374) 4월 왜선 350척이 함포에 침입하였을 때 5,000명이 피살되었는데, 그 문책으로 金鉉을 목베었다(『고려사』 세가 제44 공민왕23년(1374) 4월조).

30) 문사 洪師禹가 왜구 수백명을 죽이고 노획한 무기를 바쳤다(『고려사』 권44 세가 제44 공민왕 22년(1373) 2월조). 또 목사 朴修敬이 왜구를 격퇴하였고, 6월에는 왜구 100명을 살해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한다(『고려사』 권44 세가 제44 공민왕 23년(1374) 3·6월조).

예를 들어 고려는 1376년(우왕 2)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면서 왜구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게 되었다. 또 1377년(우왕 3) 화약 제조 기술을 익힌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³¹⁾ 화통방사군(火燭放射軍)이라는 화약무기 전문부대를 편성하기에 이른다.³²⁾ 이후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화약무기를 사용하여 진포에 정박해 있던 왜선 500여척을 불태우는 전과를 거두었다.³³⁾ 또 진포에서 선박이 불에 타서 퇴로가 막힌 왜구를 쫓아서 이성계가 황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1383년(우왕 9) 정지가 관음포 싸움에서도 큰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³⁴⁾

이후 고려는 왜구와의 전투에서 선제적인 공격 방법을 이용하여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왜구 토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그것은 대마도 정벌이었다. 이미 1386년(우왕 12) 정지가 대마도와 이끼(壹岐)의 정벌 계획을 건의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³⁵⁾ 그러나 1389년(공양왕 원년) 고려는 박위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박위는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 선박 300척과 해안 가옥을 불태우고 포로로 붙잡혀 갔던 남녀 1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³⁶⁾ 이것은 왜구 근거지로 대마도를 주목한 고려가 이제까지 수세적인 방어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상에서 고려의 적극적인 왜구 금지 외교, 군사적 방어, 대마도 정벌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응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박위의 대마도 정벌에 이후 고려 말과 조선 초기까지 무로마치 왜구가 근절되지 않고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왜구 금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 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려와 그것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1)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3년(1377) 10월조.

32)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1378) 4월조.

33) 『고려사』 권114 열전27 나세전.

34) 『고려사』 권113 열전26 정지전.

35) 『동사강목』16하 우왕 12년(1386) 2월조.

36) 『고려사』 권116 열전29 박위전 ;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 2월조.

Ⅲ. 조선 초의 대왜인(對倭) 정책과 그 변용

3.1. 조선초 대왜인 정책과 조선의 선택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왜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대왜인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은 왜구를 금지시켜서 조선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은 왜인을 적극적으로 조선 안에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왜구로 활동할 수 있는 왜인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선 초 투화해 오는 왜인 수는 고려 말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따라서 조선에 투화하는 왜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조선의 당면과제였다. 그리고 조선은 이들의 동향과 유입에 보조를 맞추어 왜인 정책을 변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테면 또 1398년(태조7) 투화해 온 등육(藤六)과 임온(林溫)에게 장군직(將軍職)을 하사하고,³⁷⁾ 1407년(태종7) 조선에 투화한 평도전(平道全)에게 벼슬을 내려 원외사재소감(員外司宰少監)으로 삼았다.³⁸⁾ 이처럼 왜인 투화자에게 벼슬을 하사하는 수직인제도(受職人制度)가 조선 초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 말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왜인 투화자가 조선 초기부터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조선은 유입하는 왜인을 일정한 지역(=포소)에 거주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407년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이 각 포소(浦所)의 사정을 알리는 상소문을 보면,³⁹⁾ 부산포와 내리포를 1407년 이전부터 왜인의 포소(=거주지)로 운영하고 있었다.⁴⁰⁾

37)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1398) 2월 17일조, ‘以降倭万户灰六, 改名藤六, 為宣略將軍、行中郎將; 羅可溫改名林溫, 為宣略將軍、行郎將’.

38)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7월 15일조, ‘以平道全為員外司宰少監 賜銀帶 道全 日本人之投化者也.’

39)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7월 27일조, ‘興利倭船 於各浦散泊 窺覘兵船虛實 實為未便. 前番都節制使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都万户防禦之処到泊 (令)諸島倭船不能通知其故 依前於各浦散泊. 乞通諭各島 渠首行狀成給 使於都万户在処到泊 以防詐偽 以一体統’

40)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산포와 내리포의 설치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1407년(태종 7)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설로는 이현중(1964)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 김의환(1979) 「부산왜관의 변천과 日本 專管居留地」, 『朝鮮近代對日關係史研究』 ;

〈표3〉 조선 초기 3포 개항에 관한 기록

장소	출처 연대	기사 내용
富山浦 (釜山浦)	1407년(태종 7) 7월	홍리왜선이 左右道都万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후략)
	1419년(세종 원년) 9월	왜인이 부산포와 내이포에 모여드니...(후략)
	1423년(세종 5) 10월	객인이 숙박하는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 선군으로 하여금 관사(館舍)와 창고를 더 짓게 하고...(후략)
乃而浦 (薺浦)	1407년(태종 7) 7월	홍리왜선이 左右道 都万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 내이포는 홍리왜선과 왜객의 사선(使船)이 항상 정박하니...(후략)
	1419년(세종 원년) 9월	왜인이 부산포와 내이포에 모여드니...(후략)
	1423년(세종 5) 10월	객인이 숙박하는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 선군으로 하여금 관사(館舍)와 창고를 더 짓게 하고...(후략)
塩浦	1418년(태종 18) 3월	염포와 가배량에 각각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왜인을 나누어 거주하게...(후략)
加背梁	1418년(태종 18) 3월	염포와 가배량에 각각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왜인을 나누어 거주하게...(후략)

그리고 <표 3>에서와 같이 염포와 가배량의 경우에는 1418년(태종 18) 왜인 거주와 홍리왜인의 증가로 인해서 이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왜인의 거주를 허가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1418년이 되면 왜인을 수용했던 포소는 부산포, 내이포, 염포, 가배량 등 4곳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419년(태종 18)에 이르면 조선의 대마도 정벌로 인해서 대마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포소도 잠정 폐쇄시켰다. 그런 이후에 1423년(세종 5) 부산포와 내이포가 다시 개항되고, 1426년(세종 8) 추가로 염포에 왜인 거주를 허락하면서, 이른바 3포(三浦)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⁴¹⁾

조선은 3포를 중심으로 왜인을 수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왜인에게 투화를 권유하고 큰 상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을 추진해 나갔다.⁴²⁾ 그

한문중(2008)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등의 연구가 있다. 또 1409년(태종 9) 설치되었다고 보는 설로는 나종우(1990) 『조선 초기 대일본 통제책에 대한 고찰』,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韓國哲學宗教思想史』; 장순순(2001) 『조선 전기 왜관의 성립과 조·일외교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15 등의 연구가 있다.

41) 김보한(2010) 『고려와 조선 전기 왜인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운영』, 『역사와 담론』56, p.165.

42) 1419년(세종 원년) 10월 대마도 종준(宗俊)의 투화를 성사시키는 큰 공이 있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고, 적은 자에게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설득하고 있다(『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

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투화해 온 왜인의 생활 안정까지도 배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례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왜인들에게 3년 동안 직(職)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봄·가을에 겹옷 한 벌, 여름에 홑옷 한 벌, 겨울에 유의(襦衣) 한 벌씩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1423년(세종 5)에 이르면 더욱 확대되어 갓·신 이외에 의복은 1인당 봄·여름에 저포(苧布) 2필, 면마포(縣麻布) 각 1필과 가을·겨울에 면주(綿紬) 4필, 저포(苧布) 2필, 면포(縣布) 1필, 면자(縣子) 3근 7냥을 주도록 결정하고 있다.⁴³⁾ 또 1448년(세종 30) 투화한 왜인에게 쌀·술·소금·간장·어육(魚肉) 등을 하사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이처럼 고려의 대왜인 정책과 차별화해서 조선은 투화해 오는 왜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선 내의 정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찬가지로 1456년(세조 2) 신숙주의 경우에는 두 명의 왜인에게 관직을 내리고, 지위에 따라서 쌀과 콩을 하사하도록 상소하고 있다.⁴⁵⁾ 또 그는 1469년(성종 원년) 왜인 평무속(平茂續)의 집이 매우 궁핍하므로 쌀과 먹을 것을 하사하여 그에게 우대한다는 뜻을 보이도록 권유하고 있다.⁴⁶⁾ 특히 세조의 경우에는 등안길(藤安吉)을 불러들여 술을 내리면서, 투화해 오는 자를 후대하고 적극 유인하여 투화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조선은 조선 안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왜인에게 양식을 내주고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왜인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까지도 배려하는 대왜인 유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배려 이외에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수적

10월 11일조, ‘其必如宗俊等親來投化 乃許其降 大者爲官 小者爲民 聽其所願 使安生業. 汝往曉諭島人 其速來報.’)

43)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1423) 5월 13일조, ‘禮曹啓 前例 投化人等限三年 勿論有無職 給春秋袂衣一襲 夏節單衣一襲 冬節襦衣一襲. 今濟用監事煩 製造爲難 請笠靴外衣服 每一名給春夏等苧布二匹 縣麻布各一匹 秋冬等綿紬四匹 苧布二匹 縣布一匹 縣子三觔七兩 以爲恒式 從之.’

44)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1448) 12월 23일조, ‘乙亥 賜投化倭護軍藤九郎米酒塩醬魚.’

45)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1456) 10월 21일조, ‘且信沙也文 三甫難灑毛皆除司直 而信沙也文 則招來侍衛爲可 請埃上裁.’

46)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1469) 12월 24일조, ‘癸酉/禮曹兼判書申叔舟啓曰 今來倭人平茂續 自其父在時 國家歲有賜米. 茂續投化來 其時亦賜米 今無所賜. 臣聞茂統家甚窘乏 請賜米及食物 以示優待之意. 乃命賜米 豆并十碩及食物.’

47)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1465) 10월 6일조, ‘令將家老 藤安吉入閤內進酒 佻曰 此輩格外人也 投化而來 當如是厚遇. 汝等其各誘引種類可任者 投化已來.’

이었기 때문에 왜인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조선 초 대왜인 정책의 부작용과 조선의 변용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왜인 수용 정책의 이면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1418년(태종 18) 하연(河演)의 상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투화한 왜인이 조선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제부터 더 이상 양식을 주지 말도록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사뭇 다른 결정을 내렸다. 조선은 평화 유지와 공존에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⁴⁸⁾

또 조선의 무거운 부담이 가중된 것은 3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가 규정해 놓은 수보다 많았기 때문이었다. 1436년(세종 18) 대마도 종정성(宗貞盛)이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관하에 있는 60명을 이전처럼 3포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때에 조선은 내이포에 거주하는 왜인 253인, 염포에 거주하는 왜인 96인, 부산포에 거주하는 왜인 29인을 돌려보내고, 종정성이 간청한 사람과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206인만을 그대로 3포에 거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⁴⁹⁾

또한 1440년(세종 22) 허가 없이 3포를 무단으로 넘나드는 왜인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었다.⁵⁰⁾ 그리고 1443년(세종 25) 3포에 숨어든 도적과 본국에서 죄

48)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1418) 3월 20일조, ‘代言河演啓曰 投化倭人等來居我國 非一二年矣. 而猶賴國家資生 其支費不資 請自今勿復給糧. 教曰 此人等初來我國 不習家產之時 宜給糧以補乏 既習我國之事而已成其生, 可以耕田而食也. 寄食我國 以為恒例 則無窮之欲 何時而已乎 近者平道全與弟皮郎書 賊人等造船一百五十隻 欲掠中國 其於往來 邊鄙之患可勝言哉. 我國因平道全等 至今得保 此特權時之意也. 賊等多逞不義 宜當自滅. 若不自滅 則豺狼之暴 何時而已乎. 儻中國知我國交通而不救中國之患 則非特無事大之誠 其終必有腹心之疾 予以此慮之無已.’

49)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1436) 3월 29일조, ‘遂遣敬差官于慶尚道 挨刷以送乃而浦住倭二百五十三人 塩浦住倭九十六人 富山浦住倭二十九人. 其貞盛請留人及情願仍居二百六人 許令仍留.’

를 지은 왜인이 이름을 바꾸어 은익하고 있으면 찾아내도록 지시하고 있다.⁵¹⁾ 조선의 입장에서 왜인의 수가 조선의 재정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3포에서 왜인 거주자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찬가지로 3포에 입항하는 사송선에 식량을 배급해야 하던 조선은 왕래하는 선박의 승선 인원수를 정하였다. 1439년(세종 21) 사송선에 대해서 대·중·소(大中小)와 소소선(小小船)으로 네 개를 구분하여,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 소소선 10명으로 선원의 수를 규정하였다.⁵²⁾ 이것은 3포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수를 규정하여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막고자 하는 재정지출의 억제정책이었다. 또한 1455년(세조 원년)에는 조선에 사는 왜인이 받는 월름(月廩)·의전(衣纏)·마료(馬料) 등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해당 관청에서 투화시기와 생활 정도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하도록 하였다.⁵³⁾

심지어는 성종 연간에는 왜인들의 불법적 약탈이 조선 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1494년(성종 25) 제포(濟浦)에서 귀화한지 꽤 오래된 왜인들이 어량(魚梁)을 강탈 점거하고 조선 관리까지 구타하는 일까지 일으켰다.⁵⁴⁾ 이제는 조선의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인들까지 끌어안고 가야만 했던 조선으로서 일정 수준의 통제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왜인을 모두 수용하자니 조선의 재정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를 거절하자니 평화가 깨질까 근심하는 것이 조선의 고민이었다.

또한 조선에 거주하는 왜인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사행의 접대도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일본과의 국교 관계에서 사신의 순수 접대비가 1만석이라고 『해동제국기』와 『경국대전』에서 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도항하는 왜인에 대해서

50)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1440) 5월 26일조, ‘若無符牒下海者 令各浦禁遏 亦勿許過送.’

51)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1443) 12월 16일조, ‘予惟在逃本賊及得罪本國之倭 恐或變名易姓 潛來隱伏. 卿知此意 密諭旧住親信之倭曰 如有潛來者 尽心伺察以告 則國家必厚賞汝矣 多方設計以捕之.’

52)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1439) 4월 27일조, ‘遣敬差官于對馬島 其事目曰 一, 使送船分大中小及小小船 大船則格人四十名 中船則三十名 小船則二十名 小小船則十名 定爲常數 一依定數給糧. 其數外人 不許給糧之意開說.’

53) 『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1455) 10월 17일조, ‘向化倭 野人等 所受月廩 衣纏 馬料之數過多 令該曹考其投化年月久近 活計豐約與夫接待輕重 量減其數.’

54) 『성종실록』 권287 성종 25년(1494) 2월 27일조, ‘鄭恬 申從濩 許誠 朴元宗議 濟浦倭人 投化已久 不畏國法 占奪魚梁 以至毆打官差 罪固大矣.’

그들이 도항해서 귀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성종실록』에서는 1477년(성종 8) 3포에서 소요되는 왜료(倭料)가 2만 2천 3백 90여 석이라고 되어 있다.⁵⁵⁾ 또 1490년(성종 21)부터 3년간 3포(三浦)에서 왜인에게 쓴 비용이 4만 5백여 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⁵⁶⁾ 이처럼 규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조선의 재정 부담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의 대왜인 수용정책의 이면에는 조선이 감당해야 하는 큰 재정적 부담이 숨어 있었다. 조선은 기꺼이 평화유지와 공존을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감내해 나갔다. 조선이 부담했던 비용은 조선이 선택한 동아시아 해역의 평화유지비용이었다.

IV. 맺음말

고려는 13세기 후반까지 왜인을 수용하고 이들을 고려 내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몽골의 두 차례 일본 침입으로 뜸했던 왜인의 고려 거주가 14세기 중반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이후 왜인의 고려 거주는 화친이 목적이 아니라 약탈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14세기 경인년(135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로마치 왜구의 침입은 고려사회에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1360년대부터 고려는 무로마치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갔다. 먼저 고려는 무로마치 왜구의 발호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교토에 왜구 금지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무로마치 막부는 왜구의 출현이 일본의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공감하고, 왜구 금지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와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55) 『성종실록』 권77 성종 8년(1477) 윤2월 11일, ‘慶尚道軍需, 雖曰不裕, 丙申年冬等會計之數一百六十五萬六千八百三十餘碩, 同年一半州倉加納七千二百七十餘碩, 三浦倭料二萬二千三百九十餘碩; 國屯田所出、監司及各官補添亦多, 年年如此儲備, 雖不大裕, 亦非不足.’

56) 『성종실록』 권278 성종 24년(1493) 윤5월 8일(신축), ‘近年客人出來之數, 比前日少減, 然考庚戌, 辛亥, 壬子三年, 三浦所費之數, 則大概四萬五百餘石, 若有凶歎, 國家將何以待之.’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무로마치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외교적인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갔다. 화약무기를 사용하여 진포, 황산, 관음포 등에서 대승을 거둔 고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다. 고려는 왜구 금지의 문제를 외교와 군사의 측면에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외교적·군사적인 대응은 성공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조선 초기 대왜인 정책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인을 적극 수용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는 고려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은 왜인을 수용하고 이들이 요구에 보조를 맞추면서 안정적인 생활까지도 배려하는 평화적인 대왜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3포를 중심으로 왜인을 수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왜인에게 투화를 권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대왜인 정책에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왜인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동제국기』와 『경국대전』, 그리고 『성종실록』에 수록된 비용의 총량은 고려가 약탈당하는 곡물의 총량과 맞먹는 수량이었다. 조선은 왜구가 고려에서 약탈해 간 수량만큼 조선 거주 왜인에게 재정 지원하는 정책의 변용을 시도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조선 평화 유지 정책은 왜구에게 빼앗기는 약탈품 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서 수용되었던 정책이었다. 따라서 조선이 기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조선 국내의 안정,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유지와 공존을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평화유지비용이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동사강목』,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세조실록』,
『해동제국기』, 『경국대전』.

나종우(1994)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pp.407-15.

- 나중우(1996) 『韓國中世対日交渉史研究』 원광대학교 출판국, p.126.
- 이현중(1994) 『講座 韓日關係史』 현음사, pp.236-46.
- 田中健夫(1957)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4.
- 김기섭(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韓國民族文化』9, pp.23-36.
- 김보한(2009) 『해적과 약탈경제』 『동북아문화연구』20, p.545.
- 김보한(1999) 『一揆와 倭寇』 『일본역사연구』10, pp.73-4참조.
- 김보한(2001) 『少弐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일본역사연구』13, pp.60-62.
- 김보한(2010) 『고려와 조선 전기 왜인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운영』 『역사와 담론』56, p.165.
- 나중우(1980) 『高麗末期의 麗·日 關係 -倭寇를 중심으로-』 『全北史學』4, pp.78-90.
- 나중우(1994)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pp.407-15.
- 손승철(2012)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
서 공존,공생의 시대로-』 『사람』41, pp.9-12, pp.17-25.
- 손홍열(1975)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9, pp.47-59.
- 이현중(1959) 『朝鮮初期倭人接待考(上)』 『史學研究』3호, pp.26-37.
- 장순순(2001) 『조선전기 왜관의 성립과 조·일 외교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15, pp.70-76.
- 한문중(2004)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日本思想』7, pp.56-58.
- 한문중(2008)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22, pp.7-10.
- 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pp.36-37, pp.60-64, pp.70-72, pp.84-87.
- 田中健夫(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pp.4-10.

❖ 투고일 : 2012.06.30

❖ 심사일 : 2012.07.24

❖ 심사완료일 : 2012.08.06